

# 삼척시세조례증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46
----------	-----

제출년월일 : 1995.

제출자 : 삼척시장

## 1. 제안이유

'94년도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시세조례를 개정된 세법 내용과 일치시키고자 함.

## 2. 주요골자

- 주민세 납기 및 징수방법 관련조항 삭제 (안 제16조)
- 건설기계에 대한 신고의무조항 삭제 (안 제24조)
- 재산활사업소에 납기조항 삭제 (안 제61조)
- 사업소세 과세대상내역중 공장, 광산, 관광시설등이 있는 지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지역 삭제 (안 제64조)

※ 삭제근거 : 조례로 정하면 위 내용들을 지방세법으로 규정함.

( 법률 제4794호 94. 12. 22 )

## 3. 관련근거

- 지방세법 제2조 및 제3호
- 시세조례개정준칙시답 [ { 세정13400-0919 ('94. 12. 27) } ]

## 삼척시 세조례 증개정조례안

삼척시 세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증 "제9조"를 제9조 및 제9조의2"로 한다.

제7조증 "특별징수 의무자가" 다음에 "법 제26조의2 빛"을 삽입한다.

제9조의 제목 "(징수유예신청)"을 "(징수유예등의신청)"으로하고, 동조본문중 "징수유예  
물"을 "법 제41조의 규정에의한 징수유예등을"로 한다.

제15조제1항제2호증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구 분	세 율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과세기준일 현재의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100억 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 세기준일 현재 당해사무소 또는 사업소(이하 이조에서 "사무소등"이 라한다)의 종업원(법 제243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종업원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법인	50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 원초과 100억 원이하 법인으로서 과세기 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등의 종업원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법인	35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 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등의 종업원수가 100인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 또 는 출자금액 30억 원초과 50억 원이하인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 등의 종업원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법인	20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30억 원초과 50억 원이하 법인으로서 과세기 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등의 종업원수가 100인이하인 법인과 자본금 액 또는 출자금액 10억 원초과 30억 원이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 재 당해 사무소등의 종업원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법인	100,000원
기타 법인	50,000원

제16조를 삭제한다.

제17조본문중 "법 제184조, 제184조의2 및 제184조의3"을 "법 제184조 및 법 제5장으로 하고, 동조 제5호를 삭제한다.

제19조 중 "법 제184조의3제2항제6호에서 "구판사업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을 "법 제266조제3항에서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한다.

제22조 중 "법 제188조제1항제2호제3목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지역"을 "법 제188조제1항제2호(3)목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으로 한다.

제24조를 삭제한다.

제31조 중 "법 제202조제1항"을 "법 제9조의2"로 한다.

제33조 중 "법 제29조 내지 제32조를 "법 제30조 내지 제32조"로 한다.

제49조 중 "법 제234조의14제2항제6호에서 "구판사업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를 "법 제266조제3항에서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토지에 대한 경감율은 100분의50으로 한다.

제50조제2항중 "법 제234조의12 내지 제234조의14"를 "법 제5장"으로 한다.

제53조 중 "법 제238조의2"를 "법 제238조의2, 법 제279조, 법 제290조제1항"으로 한다.

제54조제1항중 "법 제238조의2"를 "법 제238조의2, 법 제279조, 법 제290조제1항"으로, "비과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으로 한다.

제61조를 삭제한다.

제63조 중 법 제245조의2"를 "법 제5장"으로 한다.

제64조를 삭제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기 정 안
구 분	세 율
<p>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 현재의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100억 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시내에 종업원(대통령령이 정하는 종업원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p>	500,000원
<p>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 원초과 100억 원이하 법인으로서 시내에 종업원 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p>	350,000원



현 행	개 정 안
기타 법인	50,000원
② (생략)	.....
제16조 (납기등) ① 주민세 균등할의 납기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며 소득할은 수시 부과한다.	② (현행과 같음) (삭제)
② 주민세의 징수는 법 제17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와 법 제179조의3의 규정에 의한 특별징수방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통징수방법에 의한다.	제17조 (비과세 및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법 제184조, 제184조의2 및 제18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기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5. 건설기계의 명칭 및 종류, 취득년월일 등록번호, 등록년월일, 용도	5. (삭제)
6. 선박의 선질, 명칭, 정기장, 구조, 용도, 총톤수 또는 적재량	6. ....
7. 항공기의 종류, 이륙중량, 적재능력, 항공기의 형식, 용도	7. ....

현 행	개 정 안
<p>제19조 (구관사업등 건축물에 대한 경감)      법 제184조의3제2항 제6호에서 "구관사업      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p>	<p>제19조 (구관사업등 건축물에 대한 경감)      법 제266조의3항에서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      .....      .....</p>
<p>1. ~ 4. (생략)      ② (생략)</p> <p>제22조 (증과대상지역) 법 제188조 제1항      제2호3목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가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p>	<p>1.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p> <p>제22조 (증과대상지역) 법 제188조 제1항      제2호3목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     례로 정하는 지역"이라 .....      .....</p>
<p>제24조 (건설기계에 대한 신고의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      는 건설기계의 명칭 및 종류, 취득년월일      등록번호, 등록년월일, 용도, 취득가격, 과      세사실발생년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      터 30일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p>	<p>〈 삭 제 〉</p>
<p>1. 건설기계를 취득한 때      2. 건설기계를 매도하거나 사용할 수 없      게 된 때      3. 국외에서 사용하던 건설기계를 국내     에서 사용하게 된 때</p>	





